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

A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규직원과 같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고시나 전형을 거치지 않았...

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 출·퇴근 시간을 엄수할 필요가 없을 뿐...

Q 수련의 과정에 있는 자도 근로자인지 여부

A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

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7시에 출근하고 19시 퇴근하되...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8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중중총회결의권 행사방법에 위임장 제출방식이 허용되는지]

A 저는 제가 소속된 甲중중의 대표자인데, 甲중중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중중총회를 열어 그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A 중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중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 및 결의사항에 관한 민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

정을 살펴보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의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3조에 의하면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③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총회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면 그러한 총회는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례도 중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중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중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총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총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총원에 대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하여 중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따라서 중중총회에서 위임장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는 무엇인지요?

A 고객번호는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별도로 주어지는 관리번호로써 10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청구서와 영수증의 상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한 모든 민원 접수 및 상담시 꼭 필요한 관리번호입니다.

전기요금 납기일은 당월 25일과 말일, 익월 5일과 10일, 15일, 18일, 20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고객별로 매월 일정한 날짜로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납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전기요금 청구내역의 각 항목별 의미는?

A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은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 즉 계약전력에 대하여 kWh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전력량요금은 월간 실제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연체료는 전월 또는 전전월 청구요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 1개월은 1.5%, 다음 1개월은 1.0%의 연체료를

을 적용하여 연체율에 따라 일수 계산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Q 전력요금과 가산금은 왜 부과하는지요?

A 전력요금은 전원개발과 전력수요관리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매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3.7%의 금액을 부과하여 전기요금 수납시 징수하여 한전에서 정부에 넘겨주는 금액입니다.

추가금은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정해진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된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써 추가금이 부과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문구를 병기하여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의 개선방안

둘째, 피해자 전용 조사실 마련의 필요성으로 경찰과 검찰은 우선 소속직원들이 최소한 피해자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인적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성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경찰이나 검찰 내에 피해자 조사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해 야만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12. 232면 이하 참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편안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곳이 많다. 예를 들면, 지난달 3월에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진술조사를 작성할 당시 장시간(6시간)의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조사실 밖 대기실에 상환은 경찰관에게, 가해자(가해자 부모)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과 부딪치게 되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편안한 조사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문의 :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양용혁



요실금

요실금이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기침, 재채기, 출렁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또는 심하게 웃을 때 갑자기 소변이 흘러내리거나 속옷을 적시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요실금을 피하기 위해 요실금을 유발하는 육체적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운동 등 레저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심한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만 한다.

여성들에게는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 요실금의 약 50%가 복압성 요실금에 해당되며 순수하게 복압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는 약 25%를 차지한다.

치료는 크게 약물이나 골반운동, 전기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에 따라 요실금의 치료방법이 다른데,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이지만 요실금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비교적 젊은 여성에게는 골반근육운동이나 전기자극을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요법도 효과적이다. 반면에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보다는 약물투여와 방광훈련이 주된 치료가 된다.

포천의료원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시술되며 부작용도 적은 TOT(transobturator tape)수술을 하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 목요일에 요실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산부인과(031-539-9150)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7월 25일까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모든 과세사업자는 금년 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한 자료는 확정신고 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6개월에 한번 씩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번 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2회에 나눠서 신고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같이 신고하면 되지만,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법에는 각 세목별로 법정 신고기한이 정하여져 있으며, 그 기한을 경과할 경우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원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상 신고기간이 되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매입 정신고와 확정신고를 2회에 나눠서 신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매입 계산서가 있습니다.

특히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계산서 뿐만 아니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파산이나, 회사정리계획 및 회사의 결정으로 채권 회수불능인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18차 정기회의

일시 : 2007년 7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 포천신문 대회의실

■안건 : 제4대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감사 1인, 총무 1인, 부총무 2인
▶읍면동지부장(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각 1인
▶고문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주부명예기자단 정관 제8조 규정의 의거 단장, 부단장, 감사, 총무, 읍면동 지부장의 임기는 각각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고문 및 상임고문은 탈퇴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 0초대임원: ▶상임고문 김영복 ▶단장 김기호 ▶부총무 노홍심 ▶영중면 지부장 김희정 ▶일동면 지부장 이갑순 ▶관인면 지부장 김진숙 ▶화현면 지부장 박희자 ▶고문 강옥자
0제2대 임원: ▶상임고문 김영복 ▶고문 김기호 ▶단장 임경순 ▶부단장 최희숙 ▶감사 강옥자 ▶총무 이은미 ▶부총무 노홍심 ▶소흘읍 지부장 이효정 ▶내촌면 지부장 한희수 ▶가산면 지부장 김선애 ▶이동면 지부장 김희정 ▶일동면 지부장 이갑순 ▶이동면 지부장 함동정 ▶영북면 지부장 김미경 ▶관인면 지부장 김진숙 ▶화현면 지부장 박희숙 ▶포천동 지부장 박혜자 ▶선단동 지부장 조장희
0제3대 임원: ▶상임고문 김영복 ▶고문 김기호 ▶단장 임경순 ▶부단장 권귀자 ▶부단장 이종실 ▶감사 김옥남 ▶총무 신형숙 ▶부총무 황은나 ▶부총무 장선옥 ▶이사 강옥자 ▶이사 이은미 ▶이사 노홍심 ▶이사 김명희 ▶이사 김선애 ▶이사 김진숙 ▶이사 이효정 ▶이사 조장희 ▶이사 남만우 ▶이동면지부장 권경자 ▶영북면지부장 김미경 ▶관인면지부장 윤미애 ▶가산면지부장 박옥석 ▶화현면지부장 김은주 ▶포천동지부장 박혜자 ▶소흘읍지부장 이명순 ▶선단동지부장 조선희 ▶내촌면지부장 김순희 ▶일동면지부장 이갑순 ▶영중면지부장 박복준 ▶군내면지부장 김진남